

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6] <개정 2023. 7. 6.>

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
호	소호				
0207		제0105호의 가금(家禽)류의 육과 식용 설육(胛肉)(신선한 것, 냉장 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207	1	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(<i>Gallus domesticus</i>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			
0207	12	절단하지 않은 육(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)		0	
0207	14	절단육과 설육(胛肉)(냉동한 것으 로 한정한다)			30,000톤
		1. 절단육		0	
		2. 설육(胛肉)			
		나. 기타		0	
1602		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·설육(胛肉)·피·곤충			
1602	3	가금류(家禽類)로 만든 것(제01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)			
1602	32	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(<i>Gallus domesticus</i>)종의 것으로 한정하 다]으로 만든 것		0	
2207		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(알코 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			

		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),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 성 주정(알코올의 용량은 상관 없다)		
2207	10	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(알코 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 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)		
		1. 조주정(粗酒精)	0	86,000 킬로리터
2709	00	석유와 역청유(瀝靑油)(원유로 한정한다)		
		1. 석유		
		가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796 초과 0.841 이하인 것	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	0 100,000,000 배럴
		나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41 초과 0.847 이하인 것		
		다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47 초과 0.855 이하인 것		
		라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55 초과 0.869 이하인 것		
		마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69 초과 0.885 이하인 것		
		바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85 초과 0.899 이하인 것		
		사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99 초과 0.904 이하인 것		
		아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		

0.904 초과 0.966 이하인 것

자. 기타

2. 역청유(瀝靑油)